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5. 31.(금) 09:31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고삼석 상임위원 (1인)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1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삼석 위원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셨습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2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26-112)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11월 말에 KT 아현국사의 화재 사고를 계기로 통신장애 발생 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2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린 이후에 40일간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습니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는 규제대상 사업자의 위임범위 및 역무제공 중단 시 고지와 손해배상 고지 요건을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재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5월 초에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및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 규정을 마련하는 건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트래픽이 집중되거나 설비의 오류 등으로 인해 2시간 이내(부가통신의 경우 4시간 이내)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아현국사와 같이 통신국사 그리고 가입자 위치를 등록하는 이동전화 HLR, IDC 등 통신사의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역무제공 중단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기준 등의 고지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역무제공 중단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역무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해서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그런 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해 이런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중단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이후에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입법예고 후 주요 수정사항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고지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통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설비 장애 등으로 인한 역무제공 중단 고지 예외 시간을 1시간에서 기간통신은 2시간 이내, 부가통신은 4시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차 위반에는 35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마련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역무 제공 중단 사실 고지와 손해배상 기준 등의 고지 요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단일화한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 후 법 시행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보고된 안건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재입법 예고까지 하면서 관계부처는 물론 사업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재입법 예고 후에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고지 의무를 면제했고, 역무 중단 고지 예외시간도 늘려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전기통신 역무 중단된 사실과 사업자가 손해배상에 대해 함께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 현재 약관이나 아니면 공정위에서 정한 분쟁해결 기준상 무료서비스는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서 무료서비스는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고지를 하는 부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러면 대다수의 포털서비스는 제외가 되겠네요.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고지의무에 적용되는 유료사업자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 중에서 월 정기요금을 받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될 텐데 주로 음원을 제공하는 사업자나 OTT 등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또 한 가지 3쪽에 보면 손해배상 기준 등의 고지에 있어서 3가지 중요 고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손해배상 기준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할 때 약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동통신사는 3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 배상을 하는 것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는데 약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기존 통신장애 시에도 약관보다 적은 시간인 40분이 중단된 경우에도 요금감면이나 손해배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기준은 약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장애와 관련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그 기준을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약관에 손해배상 기준을 담고, 또 손해배상이 있을 경우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손해배상 내용이 부실하게 약관에 담겨 있을 경우에도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까?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이 법에서는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 허 옥 상임위원

- 예를 들면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이 아니라면 그 부분과 관련된 사전 약관 심사나 사후 검증과정이 있어야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구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이통사 같은 경우 이용약관을 승인이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의 기준을 대부분 인용해서 약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관에 따라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지금 현재 약관에 있는 손해배상 기준이 충분하느냐, 충분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KT 화재 청문회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업자들이 장애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고지의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제대로 내용이 맞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과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약관 자체에 대해 공정위가 심사한다거나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KT 통신국 화재로 인한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시 적용범위가 전체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되면서 입법기술상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용자 피해 구제와 더불어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전반적으로 KT 지난번 통신구 화재 사고 이후에 그 당시 많은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신용카드가 다 먹통이 되어서 막대한 영업 손해를 끼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또 손해배상 기준도 고지가 되지 않아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지금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아직 다 일단락이 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런 고지의무 또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는 입법예고 이후 사업자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재입법 예고까지 갈 정도로 손질을 많이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의하고, 특히 중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고지의무가 너무 과도한 규제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100억원 이상 매출액이나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 등 이런 대규모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일 경우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제외시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논리는 맞다고 봅니다. 무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고지의무까지 부여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이용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이런 포털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먹통이 되어서 전혀 통신이 안 된다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할 소위 의무조항은 없지만 사업자가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는 없지만 이용자들이 '왜 이렇게 카톡이 안 되지?' 했을 때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고지의무는 우리가 부여하지 않지만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빨리 알리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사업자에게 주지시켜서 물론 잘하겠지만 카톡이 안 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행령 규정에는 담지 못했지만 사업자에게는 설명해서 그런 취지를 잘 알려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무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는 제외되어 있지만 그 이외 여러 가지 처음 법안의 취지로 봤을 때 너무 강한 규제가 아니냐는 것 때문에 제외되어 있지만 실제 무료 부가통신사업자가 중단되었을 때 현재도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트가 장애로 안 된다거나, 다만 아직 법으로 의무화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랬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런 장애가 있을 때 최대한 알리게 하고, 또 알릴 때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료서비스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느냐 하는 것은 또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만을 최소한으로 담은 것이고, 나머지 의무들은 또 여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권고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시행령상 고지의무가 빠졌다고 해서 혹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대규모 사업자들이 고지의무에서 빠졌으니까 우리는 신경을 덜 쓰고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은 즉각즉각 알려주어야지요. 우리 이용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물론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에 담고 닳지 않고의 차이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빠졌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사업자 쪽에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될 때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없이 손해배상 조항이 개정된 것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백히 해서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인지 유료인지 구분 없이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손해가 있는 이용자 같은 경우 저희 분쟁이나 아니면 소송절차를 통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손해가 났을 경우에도 이것을 피해 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손해배상은 따로 가는 것이고, 어쨌든 사업자들에게 이 조항이 시행령에 빠졌다는 것이 의무면제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이번 시행령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 고지라든지 또 앞으로 더 해야 할 고지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계속 권고하도록 하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표철수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따로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번에 의결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KT 화재사고를 계기로 통신장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역무제공 중단 사실을 알리고,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도 소상히 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그간 약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원만히 잘 정리되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금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무료서비스사업자도 자율적으로 고지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무료 서비스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파 광고가 무료서비스라고 하는데 광고에 상품값이 다 전가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비싼 값으로 광고값을 물건에 분담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니 네이버니 다 무료서비스라고 하지만 이용자들을 이용해서 다 돈을 벌고 있는 사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무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엄격하게 직접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용자에 대한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가급적 자율적으로 고지하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서는 6월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이용자의 편익과 권익보호를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제4기 방통위의 뜻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습니다.

나. 2020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2019-26-113)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2020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기석 재정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기석 재정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6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2일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하였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에서 5월 29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입니다. 세입은 1조 1,970억원

인데 일반회계 422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 1,548억원입니다. 기금수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을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세출은 2,489억원인데 일반회계 640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849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용입니다. 2020년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조 1,970억원으로 '19년도 계획 대비 96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22억원으로 방송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사강화 등 과징금 수입이 증가 예상되어 '19년도 계획 대비 71억원 증가가 예상되며, 기금은 1조 1,548억원으로 '19년도 계획 대비 1,031억원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 사유는 방송사 법정분담금 징수액은 1,926억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 감소 등 '19년도 대비 48억원 정도 감소 예상하고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징수율은 4,799억원으로 5G 주파수 할당대가 분납징수분 감소에 따라 '19년도 대비 193억원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정부내부수입 및 여유자금 회수 등 기타수입은 4,823억원으로 '19년 대비 790억원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입니다. 총 세출은 '19년도 국회 확정예산 2,579억원 대비 90억원 감소된 2,48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년 확정예산 628억원 대비 12억원 증가된 640억원입니다. 기금은 '19년 확정예산 1,951억원 대비 102억원 감소된 1,849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편성 기본방향은 국정과제와 제4기 주요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지역성 증진, 인터넷 역기능 대응,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50개 세부사업 중 신규 5개, 증액 18개, 감액 14개, 전년동 13개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공동체라디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국내외사업자 공정경쟁 기반조성, 유료방송서비스 시장보호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증액사업입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등 18개 사업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액사업입니다.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사업 등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317억원 감액하였는데 주요 감액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자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붙임>자료는 2020년도 예산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지출 총괄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확보작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20년 총 세출은 2,489억원으로 지난해 확정예산 대비 9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줄일 것과 늘릴 것, 또 새로 책정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바로 예산편성입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위원회의 철학과 의지가 예산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고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액이 많은 사업들을 보면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재난방송의 신속성·신뢰성 제고사업,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사업, 군장병과 취약계층의 인터넷윤리 교육, 디지털 성범죄 신속대응을 위한 방심위 지원,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그리고 국내외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등의 순서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중소방송 지원예산이나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예산 등은 지난해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소위에서 대부분 삭감됐던 것들입니다. 부족한 예산과 기금 상황임에도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신규예산 31억 4,000만원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비상대응시스템도 점검해서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방송사들의 고품질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소개하고 한류를 홍보할 수 있는 MIP TV 주빈국 행사 개최예산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추진예산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지역 균형 발전의 큰 맥락에서 지역 중소방송사 프로그램의 제작지원 예산의 증액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예산,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지원예산,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지방사무소의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장님 이하 사무처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드리며, 부위원장님과 상임위원들도 최대한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서 허 욱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짚어 주셔서 특히 이번에 재난방송이 증액된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셔서 저는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 보겠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이라는 항목에 116억원이 이번에 편성됩니다. 해당 국·과는 아니지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 이 현 기획조정관 직무대리

- 소외계층은 TV 보급하는 사업 등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여기 보면 장애인용 VOD 제작지원에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 장애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VOD를 통한 방송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회의에서 여러 번 이 대목을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불과 2억원 정도 가지고 VOD 제작지원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장애인들이 방송을 보고 싶어도 실시간 온에어 되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보는데, 대개 주시청시간대에 편성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들을 VOD 다시보기를 통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실성 있게 배당을 해야 할 텐데 2억원밖에 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 김기석 재정팀장

- 알고 있습니다.

○ 김재영 사무처장

- 사무처장입니다. 우선 지상과 비율이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2억원은 내년에 최초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방송 제작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 지상과 유료방송의 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용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금년에 46억원인데 내년에는 52억원으로 6억원을 추가로 증액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방송콘텐츠 제작도 4억원인데 6억원으로 또 2억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TV 개선도 마찬가지로 44억원으로 4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은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VOD 제작으로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편성했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이 이번에는 약 5억원 정도 깎였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기석 재정팀장

-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미흡'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5억을 감액해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이지요?

○ 김기석 재정팀장

-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이라는 항목을 보면 이번에 16억원이 신규 사업이겠지요?

○ 김기석 재정팀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은 주로 중소 상공인들 방송광고 지역광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김기석 재정팀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서 허 욱 위원님도 지적 하셨지만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우리가 올해도 증액을 39억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다 올렸는데도 예산 마지막 통과 과정에서 전액이 깎였습니다. 올해도 예상

해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아마 계수조정소위에서 소위 쪽지예산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때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 쪽으로 많은 예산들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이라기보다 작년에 막판에 올렸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기재부에 제출할 때 예산당국에 잘 설명해서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중소방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콘텐츠에 지원해 주고 지역성 강화에 가장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당국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 재정팀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내년 예산안 가운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부문입니다. 올해 쓰는 예산은 13억 3,000만원 정도에서 내년에는 41억원 9,000만원, 28억원 이상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역점을 뒀서 이것은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당연히 남북방송통신 관련 예산도 일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방송한류를 우리가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舊 방송위원회 시절에는 진흥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방송한류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했던 것이었는데 그 이후 저희가 진흥기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MIPTV나 MIPCOM에 나가 보면 우리 활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터키, 러시아 등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국제시장에 활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한류 업그레이드 10'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허 옥 위원님도 같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부터 설득을 충분히 하고, 또 국회 처리과정에서 실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현 기획조정관 직무대리

-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세출이 작년에 비해서는 90억원 감소되어서 마치 내년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그것은 아니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출한도와 작년 확정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줄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년도 지출한도는 2,300억원이었지만 실제 최종 확정은 2,570억원으로 약 2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정예산 대비 90억원이 줄어든 예산안을 지출한도에 따라 만들었지만 국회에 가면 당연히 내년 확정예산보다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줄었다고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말씀처럼 지출한도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억원을 담았고, 방송기반국장과 협력해서 그 예산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예산안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제4기 위원회 정책과제나 국정과제 등 방통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점사업들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 기관이 국민들에게 내놓은 예산안은 그 조직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와 철학이 담기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통해 앞으로 방통위가 주요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뿐만 아니라 실제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당국이나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재난과 전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정부의 제1의 업무이고, 그런 업무 중의 하나가 재난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난방송을 잘하기 위해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자세와 특히 재난 민감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재난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1억 4,000만원의 재난방송 운용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위해 내년도에는 어떠한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였는지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도 소상히 알리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송광고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송사 경영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광고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방송협찬도 광고와 마찬가지로 언론진흥재단에 10% 대행료를 내도록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원 확보 구조가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한 지역방송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안에 관한 안건을 다루면서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방송들의 어려움 때문에 제도가 바뀔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민방과 지역MBC 간 연합 토론회가 곧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들의 어려움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주시해야 할 것이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철수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방송

계에 특히 지역방송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지역민방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차기 회의는 6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4분 폐회 】